

2020. 07

2020년 자체감사 결과 공개자료

(만경읍)



김 제 시
기 획 감 사 실

처 분 요 구 목 록

□ 지적사항 총괄

(단위:건,천원,명)

합 계(지적)			시 정				주의	훈계	개선	권고	통보
총 건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소계	회수	추징	기타					
22	2,005	-	6	3	1	2	11	-	-	-	5

□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천원, 명)

연번	건 명	처분요구			비고
		처분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계	22건		2,005	0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2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주의			
3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주의			
4	국내여비지급 부적정(공용차량 이용)	시정(회수)	50		
5	이장 활동보상금 및 참석수당 집행 부적정	주의			
6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시정(소화)	130		
7	인지세(수입인지) 수입 소홀	시정(소화)	40		
8	회계관계공무원 부재중 재정시스템 승인 및 인장 날인	주의			
9	건설공사(콘크리트공) 공사감독 소홀	주의			
10	사업예산 잔액 집행 부적정	주의			
11	환경관리비 사후정산 부적정	시정(회수)	77		

연번	건명	처분요구			비고
		처분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12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시정 (추징)	1,578		
13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발급대장 관리 소홀	통보			
14	인감증명서류 이송처리 업무 소홀	통보			
15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통보			
16	쌀/밭소득등 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30		
17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처리 소홀	주의			
18	농업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주의			
19	농치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주의			
20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주의			
21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관리 소홀	통보			
22	장애인복지카드 관리 소홀	통보			

[일련번호: 1]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만경읍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 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에 따르면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기타수용비(법용 S/W 구입비, 도서구입비, 기기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일반수수료, 관보구독료 등)로 사용하며, 소규모 용역에 대한 역무대가 등으로 집행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오물 수거료 등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불하는 제세금,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등이라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 집행지침 8-4 행사실비보상금(301-09)에 따르면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8,000원)를 적용하여 계좌입금한다.

「지방계약법」 제18조제2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증빙서류를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더불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① 행사실비보상금 부적정 집행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민간인에게 급식 제공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을 집행하면서 급식단가(8,000원) 초과 및 행사 참여자 명단 및 참여 여부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서류 미첨부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 식비는 행사운영비가 적정함에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

② 예산과목 해소 부적정 집행

③ 계약상대방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세출예산을 부당하게 지연하여 집행

④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납부기한 내에 지출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연체료를 부당하게 집행 위와 같이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2]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만경읍
제 목	지출결의서 작성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 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이며, 지출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및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집행 요구 시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 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및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집행 요구 시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 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128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에 의거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123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의거 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4호서식을 사용하고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53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50호 서식)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별지 제53호 서식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에는 ‘승낙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의 영수·청구인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25조제1항에 따르면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검수(별지제96호서식)는 물품출납원이 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27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하며, 제3항에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란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 ①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200만원 초과 이상 물품을 구입하면서 ‘(일반)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성립의 증거가 되는 승낙사항 작성 및 채주 날인 없이 세출 예산을 집행
- ② 지출결의 상 내용 정정 시 그 자수를 란 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함에도 수정테이프를 이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지출결의 내용 정정
- ③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면서 원본대조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수의 지출결의서 및 검사(수)조서 결재란에 관계자의 인장 누락

위와 같이 지출결의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3]

김 제 시

기관·부서명	만경읍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규정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에 따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 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2008년 3월에 시행된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은 행정안전부령(승)으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집행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기부행위가 아니다.

그러함에도 만경읍은

- 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집행
- ② 직원 단합대회 기념품 구입, 직원 부친 별세 조화 및 명절 직원 격려품 구입은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가 아님에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적정 집행한

위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4]

김 제 시

기관·부서명 만경읍
제 목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 50,000원
내 용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 제1항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공용차량을 이용한 때 1만원을 감액하여 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총5건, 5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과지급 된 여비 50,0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회수)

[일련번호: 5]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만경읍
제 목	이장활동보상금 및 참석수당 집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김제시 이장·통장·반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임명된 통장·이장·반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에 따르면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은 기본수당 월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2회)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 법규에 따른 적법 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또한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2018. 9월부터 현재까지 이장 활동보상금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 ① 정당한 채주가 아닌 자에게 부적정하게 집행
- ② 회의 당일 미참석자에 대해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6]

김 제 시

기관·부서명 만경읍
제 목 지역개발공채 소화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소화)
재정상 조치 130,000원
내 용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 제1항의 [별표1] 기준에 의하면, ①100만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의 경우 대금 청구액의 2.5/100, ②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의 1.5/100의 채권을 소화하도록 되어 있고,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

같은 조례 제6조 제4항과 관련된 [별표2]의 매입의무 면제대상은 ①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 구매, ②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③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건설기계 이전등록 ④지방 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업체의 용역계약 ⑤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총130,000원을 미소화 하였으며, 총125,000원을 과소화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미소화한 공채 130,000원을 즉시 소화하기 바랍니다.(시정-소화)

[일련번호: 7]

김 제 시

기관·부서명 만경읍
제 목 인지세(수입인지) 수입 소홀
행정상 조치 시정(소화)
재정상 조치 40,000원
내 용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 의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인지세법 제8조(납부)에 의거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총2건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인지세 2만원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총40,000원의 인지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미징수한 인지세(수입인지) 40,000원을 즉시 소화하기 바랍니다.
(시정-소화)

[일련번호: 8]

김 제 시

기관·부서명 만경읍
제 목 회계관계공무원 부재중 재정시스템 승인 및 인장 날인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회계 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회계 관계공무원의 유고 시 내부결재 등의 방법으로 직무대리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선임하고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그 직위를 부여받은 직원의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51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지출원의 지급명령
- 나. 출납원의 지급통지
- 다.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 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 마.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그럼에도 만경읍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 ① 재무관 부재중 인장날인 및 재정시스템 승인, 재무관이 아닌 자의 재정시스템 승인
- ② 지출원 부재중 인장날인 : 19건, 12,196,880원

회계관계공무원 부재중 재정시스템 승인 및 인장날인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9]

김 제 시

기관·부서명 만경읍
제 목 건설공사(콘크리트공) 공사감독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행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 의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제13장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등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4조(설계서 등의 검토)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문서와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설계도면, 시방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등의 사항을 검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 ① 콘크리트포장공사 함에 있어 다짐도 향상을 위한 필수 공정인 살수차(5,500L) 살수 공정을 감독함에 있어 출장 결과보고서(공정확인) 및 준공도서에 증빙자료(살수차 임대) 없이 준공처리
- ② 준공서류가 미비하여 다짐(롤러) 공정 확인 불가

위와 같이 건설공사(콘크리트공)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10]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만경읍
제 목	사업예산 잔액 집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예산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할 수도 있으므로 예산의 이·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종합해보면 원칙적으로 예산의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행정절차 이행(예산이용 : 지방의회 승인, 예산전용 : 자치단체장, 예산변경 : 실·국장 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를 예산변경(부기변경) 등 행정절차(승인 등)를 이행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11]

김 제 시

기관·부서명 만경읍
제 목 환경관리비 사후정산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 77,000원
내 용

「건설기술진흥법((구)건설기술관리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제1항 제1호에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환경관리비의 세부산출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3항 별표 8에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급자가 관련법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집행하도록 관리 감독 하여야 하고 확인된 비용만 사용 실적에 따라 정산 지급하여야 함에도, 준공검사 시 당해 공사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준공사진을 첨부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환경관리비 77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산면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환경관리비 사후정산 과다 지급액 77,000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회수)

[일련번호: 12]

김 제 시

기관·부서명 만경읍
제 목 주민세(재산세) 과세 누락
행정상 조치 시정(추징)
재정상 조치 1,578,180원
내 용

지방세법 제84조(신고의무)에 의거 주민세(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세 조례 제8조(신고의무)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동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 대장에 등재 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에 의거 과세기준일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지방세법 제80조와 제 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주민세대장 정비소홀로 인하여, 주식회사 ◇◇◇ 등 2개소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 1,578,180원 과세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누락 과세분 1,578,180원을 즉시 추징하시기 바랍니다.(시정-추징)

[일련번호: 13]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만경읍
제 목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발급대장 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및 인감증명사무편람에 따르면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확인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하고 “위임장 작성 내용 확인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위임자는 위임을 했다는 표시로 날인 또는 서명(성명을 쓰는 것)을 하여야 하고, 위임사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며,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이며, 위임장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위임장 및 동의서에서 접수인을 날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발급일자와 함께 표시하여 재사용되지 않도록 인감증명 발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 수령인란에 본인인 경우에는 무인 또는 서명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2018년 9월~2020년 06월 감사일 현재까지 인감증명을 발급하면서

①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아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재사용

방지조치를 소홀

- ② 위임장에 위임사유 및 위임날짜 등을 누락하였음에도 위임장에 보완사항을 신청인에게 보완토록 행정지도 하지 않고 위임장을 수리하여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업무처리를 소홀
- ③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신청사항 기재 및 무인 또는 서명을 누락하여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업무처리를 소홀

위와 같이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14]

김 제 시

기관·부서명 만경읍
제 목 인감증명서류 이송처리 업무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5조의3(인감대장의 이송) 제1항에 따르면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 증명청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6장 제155조 내지 제161조에서는 기간 기산점 및 만료점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가. 제155조(본장의 범위) :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산상의 처분 또는 법률 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나.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라.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이에 따라 구 증명청에서는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하여 신증명청에서 관련 공부의 이송 요청을 할 경우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이송 요청을 받은 날 포함)에 인감 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인감대장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기간을 산정할 시 이송요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되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있을 경우 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만료일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 등 22명의 진출자에 대해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송 처리하지 않고 최장 3일간을 지연 이송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15]

김 제 시

기관·부서명 만경읍
제 목 전입신고 사후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된 내용이 포함된 사후확인용 자료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장(동인 경우에는 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확인용 자료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후확인용 자료에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2018년 9월~2020년 06월 감사일 현재까지 전입자 확인일자 및 거주여부확인 누락, 확인자 세대주(원) 및 이장·통장 서명 누락 등으로 부적정하게 되어있는 전입신고 사후확인용 자료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전입신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16]

김 제 시

기관·부서명 만경읍
제 목 쌀/밭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시정(회수)
재정상 조치 129,640원
내 용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같은 법 제9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에게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지하고 있는 농지분에 한하여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소득직불금 등록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쌀을 생산할 것 등을 갖춘 자에 대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쌀/밭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신청농지의 경작 확인 등을 소홀히 하여 김제시 만경읍 **번지외 2필지(573㎡)가 일부가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묘지, 농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총3필지에 대해 129,64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부적정하게 지급된 직불금 129,640원을 즉시 회수하기 바랍니다.(시정-회수)

[일련번호: 17]

김 제 시

기관·부서명 만경읍
제 목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처리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농지법 제10조, 제49조제2항 및 제54조와 2018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농지이용실태조사)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에 따라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원부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고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 구현과 소유질서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3년간 취득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부재지주 소유농지,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시설부시 전수조사 등 관련법령 및 운영지침에 따라 관련 농지에 대하여 충실히 조사 후 김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감사기간 중 조사 대상 농지 가운데 부재지주 농지에 대하여 직불금 수령내역과 대사한 결과, 총50건 78,066.88㎡에 대하여 타인이 직불금을 수령하여 자경농지가 아님이 명백한데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최종 보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필지들을 누락 제출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18]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만경읍
제 목 농업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김제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0조(사후관리)에 의하면, 시장과 읍면동장은 농어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 각종 농업보조 지원사업 지침에 의하면 읍면동장은 사후관리대장 및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관리상태, 이상유무 등을 연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소규모육묘장 지원사업,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 등 농업보조사업 사후관리를 하면서 연1회 이상 사후점검 기록이 없는 등 농업보조사업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19]

김 제 시

기관·부서명 만경읍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농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특히,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내이어야 하고,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김제시 만경읍 @@번지 등 총 3건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농지 소유 상한을 검토하지 않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처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20]

김 제 시

기관 · 부서명	만경읍
제 목	소형농기기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및 「김제시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시행 지침(2015~2019)」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농기계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정부지원금으로 5년 이내에 동일기종을 보조받은 법인 또는 농업인’과 ‘최근 5년 이내에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2016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에게 ‘동력콩탈곡기’를 지원하고, 2019년에도 사업대상자로 선정, ‘전동전지가위’를 중복 지원하여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21]

김 제 시

기관·부서명 만경읍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으며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매분기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으며, 반기별 급여관리 점검에서도 제외 되며 이 경우 스스로 금전소비가 가능한지 여부를 간략히 점검하여 금전관리 가능시에는 복지급여 관리 확인서(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 서식 40호)를 수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최* 외 1세대에 대해 급여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거나 복지급여 본인관리 대상자로 관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통보)

[일련번호: 22]

김 제 시

기관·부서명 만경읍
제 목 장애인복지카드 관리 소홀
행정상 조치 통보
재정상 조치 없음
내 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①(116쪽) 따라 읍면동장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교부하고, 교부 내역을 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2020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①(123쪽)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에 따라 읍면동장은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거주불명자 제외)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회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만경읍은 고*식외 8명의 신규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대상자의 교부내역을 전산망에 등록하지 않고, 사망자 최*본의 장애인복지카드를 미회수 하는 등 복지카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만경읍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통보)